

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광진구 소속 전 병 주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현재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양한 시설에서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, 낮은 수준의 보수와 적은 복지제도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합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

전문적인 기능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

비롯하여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,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